

『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개정 및 농식품부·환경부 합동 연구용역에 따른 「축사 제한거리 재설정」 권고안을 반영하여 생활환경 보전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2조)
 - 배출시설의 적용범위 확대 : 방목지 추가
 - 가축의 정의를 상위법과 통일되게 규정
-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신설(안 제3조의2)
- 축사의 이전명령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(안 제4조)
- 읍·면·동 축종별 제한 및 축종별 사육제한 거리를 적용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(안 별표 1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
같은 법 시행령, 「행정절차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, 유통축산과 및 정수과와
합의되었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

-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개정 및
농식품부·환경부 합동 연구용역에 따른
「축사 제한 거리 재설정」 권고안을 반영,
가축 사육에 따른 악취 및 위생 문제를 개선,
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
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
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나,
축종별 제한구역, 거리 재설정은
가축사육 농가,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
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